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이상복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전반기 의장·부의장 선거 시 당선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의장·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(안 제8조제3항)
- 의장·부의장 후보 등록 기한 변경 및 당선인 후보 등록 조항 신설(안 제8조제5항)
- 의장·부의장 후보 중복 등록 금지 조항 신설(안 제8조제6항)
- 임시의장 선거시 등록절차 생략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0조제2항)

3. 규칙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3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036-8953
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로, “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오산시의회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의회”를 “경기도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연장자”를 “최다선 의원을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원은”을 “의원이나 당선인은”으로, “2일전”을 “전일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”로, “서면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꺾일 경우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.

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다른 직에 중복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.

제9조의2제1항 후단 중 “법 제8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절차는 생략한다.

제76조제1항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<u>오산시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선서) 의원은 임기초에 <u>의회</u>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</p> 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· ② (생략)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<u>연장자</u>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<u>의원</u>은 해당 선거일 <u>2일전 18:00</u>까지 의회사무과에 <u>서면</u>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. <<u>단서 신설</u>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 ----- ----- <u>오산시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선서) ----- <u>경기도 오산시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-----.</p> 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최다선 의원</u>을, <u>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 <u>의원이나 당선인</u>은 ----- ----- <u>전일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</u> --- <u>별지 제1호 서식</u>에 따라 서면----- ----- <u>단,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될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9조의2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</p> <p>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·사직·불신임·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·질병·휴가·경조사 및 <u>법 제82조의</u> 규정에 의한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임시의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·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제76조(방청의 허가)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현장 방청, 이메일 등을 통해 <u>별지 제1호서식</u>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</p>	<p><u>경우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다른 직에 중복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.</u></p> <p>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임시의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단,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절차는 생략한다.</u></p> <p>제76조(방청의 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